

## 職業人으로서의 教授像

金 昇 漢

(前 中央日報 主筆)

### I. 緒 言

필자에게 주어진 “職業人으로서의 教授像—大學社會의 밖에서 본”이란 논제는 약간 당혹감을 주는 것이다. 생각컨대, 필자가 과거에 일간 신문사의 논설위원, 주필 등으로 일해 왔으므로 이를테면 “言論人의 눈에 비친 大學教授像”을 그려 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현재 言論人의 신분을 자처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더러, 실상은 내 생애 전체가 완전히 大學社會 밖의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쓸 처지는 못 된다. 왜냐하면 필자는 대학졸업 후의 첫 직업을 “教授助務員”(지금의 “助教”를 그때는 그렇게 불렀었다)으로서 시작했고, 그 뒤 여러 직장을 전전하였지만, 결국 나는 혹은 전임 또는 시간강사직을 오가면서 대학사회와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한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필자 자신은 항상 자신을 大學社會의 일원으로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감히 이 小論의 집필을 수락한 것은 나름대로의 使命感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필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날 한국 대학의 교수들이 빠져 있는 挫折感과 葛藤의 실태를 전 언론인의 입을 통해 솔직이

실토함으로써 함께 반성하고 사색하여 이 나라 대학사회의 발전에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피력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글 가운데 동료교수들에게 실례가 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비평은 담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대학사회 밖의 제3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正統적인 대학교수의 신분도 못 가진 한 논객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論評의 크라이테리아(criteria)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 II. 韓國 大學教授들의 딜레마

오늘날, 한국 사회의 대학교수들에 대한 평가라 할까 사회적 羨望度는 예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 주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設問調査에 의하면, 결혼 상대자로서의 대학교수에 대한 선망도는 해마다 저하되고 있고 일반 성인들의 職業選好度에 관한 조사에 의하더라도 대학교수직의 레이팅(rating)은 의사, 법관, 외교관, 대기업체의 임원 등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통속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대학교수직에 대한 魅力이나 人氣는 이제 “별 볼일 없는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해방 당시 南北韓을 합해 7,800명에 불과했던 대학교수가 1980년 현재로

는 무려 14,700여 명으로 불어났고, 대학생수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중 73배로 급증함으로써, 이제는 대학이나 대학교수 자체의 稀少價値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물론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또 한국 사회 특유의 정치·사회적 諸 與件 때문에 빚어진 이른바 “정치교수”나 “어용교수”나 하는 시비가 대학교수 전반에 대한 威信墜落을 가져오게 한 점도 묵과할 수 없다. 게다가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한 收入面에서의 상대적 열세 등도 대학교수직에 대한 사회적 선망도를 추락하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우리 나라 대학교수들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評價切下를 가져오게 한 보다 중요한 요인은 오히려 오늘날, 한국 대학교수들이 빠져 있는 의식상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오늘의 한국 대학교수 중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의 “象牙塔的”대학상을 清算하지 못한 채, 현대 산업사회가 대학교수들에게 요구하는 질적·구조적인 기능전환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우리의 경우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지식과 정보의 폭발현상이 일상화되고 있고, 고등교육기관의 大衆化現象이 가속화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의 대학교수들은 전통적으로 대학교수의 고유한 직분으로 간주되어 오던 研究와 教授 그리고 奉仕 등 그 어느 한 가지에도 충실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대학들의 존재양식이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수 직분에 대한 확고하고 뚜렷한 理念의 定立은 대학교수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당국자 및 문교정책당국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本質的인 요구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아무도 감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오지부동하게 穩全되어 온 교육법 제108조(대학교육의 목적)의 애매성 내지 비현실성은 잠깐 論外로 하더라도 이미 대중교육기관화한 대학에서의 연구나 교수 또는 봉사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대학교수로서의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본격적인 對應方案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의 한국 대학사회 전체를 위해서 커다란 不幸이었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으뜸가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世界的 基準에 의한 學問的 能力(academic competence)이나 그에 걸맞는 專門家的 倫理(professional ethics)에의 헌신을 당당히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1980년 현재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교수 1인당 평균 39.2명의 학생(선진국 평균 6.2명)을 교육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처지에 있는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大學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양자가 모두 學問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Humbolt적인 大學教授像을 고수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오늘의 세계에서는 비현실적인 요구일 것이다. 日就月將하고 있는 오늘의 技術情報社會가 요구하는 研究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前提條件인 신속하고 풍부한 정보자료의 처리시스템과 값 비싼 실험실습시설 및 풍부한 연구비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할 것인데, 그 어느 한 가지 조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한국의 대학들이 자체의 노력만으로 현실사회가 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研究業績을 쌓아, 대학교수로서의 학문적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일에 속할 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을 남긴 소수의 교수들은 예외 없이 外國大學이나 國內大學 밖의 특정 연구소 또는 대기업체부설 연구시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놓고 雜多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고, 복잡한 실험실습을 지도해야 하는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나마 가장 效率的인 교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教育方法의 開發에 거의 무관심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이 자체내에 이와 같은 特殊한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같은 부서를 둔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 잘못이 누구에 있진 대학교수

들의 자신감 내지 프라이드 상실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교수방법을 이른바 “강의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세미나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근자의 일부 논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大學教授機能 자체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의 상황하에서는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대학교수든지간에 教育工學的 접근방식에 대한 깊은 소양은 대학교수로서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대학교수의 또 하나의 직분인 奉仕機能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안이한 자기변명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수들에게 봉사란 무슨 잡꼬대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나, 이미 大衆教育機關화한 오늘의 대학들은 과거의 전통적 대학들 못지 않게 널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존립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대학들의 봉사기능이란 과거처럼 단순한 대학의 개방이나 공개강좌의 실시 또는 대민의료봉사 등 직접적인 지역사회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대학과 대학교수들은 現代情報社會를 움직이게 하는 中核으로서의 테크놀로지(technology)문화를 일단 완결된 관리의 논리에서 자립한 미완결의 것으로 취급하여 산업체와 일반국민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자유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관리사회의 논리를 구축하고 가설을 설정하며, 그 檢證作業을 대중의 참여를 통해서 실시함으로써 그 교육의 봉사기능을 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 한 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創造性과 革新精神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봉사기능의 중요성을 달리 표현한 말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 Ⅲ. 專門職業人으로서의 教授像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대학교수들은 그 理由야 어디 있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몇몇한 자신감이나 프라이드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 것 같다. 이리하여 오늘의 한국 대학사회에 있어서는 그 反動으로 몇몇한

學問的 能力 대신 편협하고 고루한 학벌주의가 성행하고, 씩씩는 듯한 창의정신과 왕성한 혁신의 기풍 대신 無事安逸主義가 대학풍토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치다할 것인가?

우선 진정한 학문적 능력 대신 편협하고 고루한 學問主義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대학교수들간의 학술적 비판이나 인접학문분야 전공 학자들의 진밀한 學際的 協同의 기풍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대학교수의 人事慣行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인사의 학문적 업적이나 그 능력보다도 출신학교, 친분관계, 연령 등 대학교수 자격으로서는 非本質的인 요소들이 더 지배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교수들 상호간의 비판은 자칫 감정적 응수로 끝나는 것을 자주 目睹할 수 있고, 오늘날 한국 대학사회에서의 전공이 다르거나 소속이 다른 학자들간의 학제적 공동연구나 진밀한 협조관계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실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또 오늘의 한국 대학들의 교수진이 이른바 유명대학일수록 自校出身者 또는 특수한 親分關係를 가진 연고자들로서 구성된 매우 閉鎖的인 것이라 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심한 경우 대학교원의 공개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인사에 관여하는 교수들이 자신들보다, 優位의 資格者나 연고관계가 전혀 없는 新參者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을 필자는 알고 있다. 제도적으로 新進氣銳의 젊은 학자들의 영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교수 자격기준도 문제가 있지만 연구능력이나 연구실적 등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학위나 연령 등 外形的인 요건을 구실로 하여 有爲한 인재를 발탁하지 않고 既得權에 안주하려는 우리 나라 대학교수사회의 기풍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대학교수상을 흐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문직업인이란 본래 特定機能을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전문적인 知的 訓練을 받고 일정한 資格證(licence)을 획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의사가 6년간의 대학교육과 5~6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의사면허증을 따기 위한 국가고

시를 처리야 하는 것이나, 법관이 수년간의 일반교육외에 역시 국가고시를 통해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서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같은 教師職인 망정, 초·중등학교의 교사가 일정한 교사양성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가져야 교단에 설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이치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요구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으뜸가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대학교수에 관한 한, 교육공무원법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검정은 대학교수들 자신이 설정하는 자체적인 기준에 위임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고유권한인 自治와 自律機能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지만, 만일 우리의 대학사회가 이 제도의 그늘 밑에 전술한 바와 같은 편협한 學閥主義나 情實主義 또는 無事安逸主義의 발호를 조장하게 된다면 이는 그 대학사회 자체나 대학교수 자신들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필자는 우려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대학교수들의 학문적 능력을 높이고 그들의 실추된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사회 자체 내부에서 이러한 人事制度 改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우리 나라 대학사회에서 그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의 대학교수들의 行動綱領을 규정한 專門的 倫理가 없다는 것이 기이한 사실이라 생각한다. 전문직업인에게 일정한 특권을 인정하는 자격증과 함께 거기 따르는 전문직업 윤리 강령이 있어 왔다는 사실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던 중세기 이래의 고전적 대학사회의 不文律이었다고 할 수 있다. 聖職者에 대한 묵사 또는 신부의 絞品과 함께 성문 또는 불문율의 윤리강령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의사 세계는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의 정신을 구가한 의사 윤리강령, 언론인들에게는 신문·방송윤리강령,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윤리강령 등이 있고 대학교수 이외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도 교원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다. 대학교수는 그 職務의 특수성과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따로 大學教授 倫理綱領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그 정신은 진리탐구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유와 헌신, 창의성·합리성·공정성의 추구, 학생지도에 있어서의 인격적 감화의 중시 등을 명시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같은 大學教授 倫理綱領은 반드시 문장화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학교수적이 으뜸가는 專門職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분명하게 설정되고 대학교수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한 章典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수사회에 이와 같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희박하다는 사실은 앞서 말한 대학사회내의 부정적 요소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모든 전문직업인들이 스스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응분의 制裁가 가해지고 심지어는 자격증의 박탈까지 행해지고 있는 사례를 상기할 때, 유독 대학교수 사회만이 이에 대해 예외일 수가 없음은 물론, 이러한 自律的인 倫理意識의 振作이 오늘날,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는 대학교수 자신들의 자신감 내지 프라이드의 회복은 물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IV. 結 語

이상, 한국 대학교수들에 대하여 좀 가혹한 批評的 見解를 피력하였다. 요컨대 오늘날 한국 대학교수들은 스스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存在樣式과 그에 따른 명확한 機能分擔作業에 착수하여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학 풍토에 오직 학문적 권위에 의한 協同的 努力의 기풍이 충만하고, 진리수호를 위한 용기, 창의와 창조의 정신 등이 샘솟듯 융솟음치는 慣行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